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7

발의연월일 : 2024. 7. 19.

발 의 자: 김선교·김상훈·구자근

강선영 · 김석기 · 이양수

이헌승 · 최수진 · 김성원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 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면)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 ----2027년 12월 31일-----감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 · 분할 등에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대한 감면)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 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 (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 12월 31일----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 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 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 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 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 등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 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7년 12월</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7년 12월</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 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7. (생 략)

④ ~ ⑩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